

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(제23조의3제1항 관련)

사용되는 재생원료	적 용 대 상	사용비율
1. 제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재생원료	가.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(PET)병	10퍼센트
	나.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·전자제품	20퍼센트
	다. 그 밖의 제품·용기	10퍼센트
2. 제1호 외의 재생원료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·용기	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